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5년마다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계약 방식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근거해 해당 상가의 상인들이 주축이 된 법인에게 5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 서울시의 대표 상점가였던 지하도상가는 대형 쇼핑몰의 등장,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실이 늘면서 상권이 침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해당 상가를 직접 운영하면서 상권 브랜드를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된 시점에 공유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5년 단위의 최고가 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 방식으로 인해 상인들의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몰락한 상권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가 계속 공실이 늘어 유명 상가가 된다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도시 미관과 치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라면 인천시 등 다른 시·도의 지하도상가처럼 서울시도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5년 단위 최고가 입찰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